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59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5
1. 제정안의 개관	5
2.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및 주요 쟁점 검토	7
3. 조문별 검토	17
가. 목적 및 정의	17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국가 등의 책무	22
다.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공협력 의무	25
라.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 공공재생에너지 목표 비율 포함 의무	27
마.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	33
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재원 및 발전산업 구조 개편	37

사.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 및 주민 의견 수렴	40
아.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	47
자.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50

※ 참고자료 53

1.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53
2. 제정안 비용추계서 요약	57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18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은 2025년 1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하여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재생에너지 시장의 대부분은 민간에서 담당(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중 92%, 2023년 12월 기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건수 77개중 70개)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을 담당하는 공공영역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의 전환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는 경우 앞으로 전력시장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될 재생에너지 발전시장이 민간 기업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해상풍력 분야 등에서 해외 자본의 재생에너지 시장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전력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전력시장의 공공성과 안보적 기능의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큼.

또한, 화력발전의 점진적 퇴출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화석

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 및 일자리 문제가 노동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정부 정책과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 및 고용단절을 최소화하도록 향후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해당 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하도록 해야한다는 현장의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을 중심으로 공공영역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서의 소규모 분산전원의 확대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이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 간에 공공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전산업의 민영화 문제, 전력산업의 안보적 기능 훼손 등 국민의 우려를 종식시키고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재생에너지’ 및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의 개념과 정의를 설정함(안 제2조).

나.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 간의 공공협력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재생에너지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기본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총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2035년부터는 5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구속력을 강화함(안 제6조).

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목표 및 투자계획,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 및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공공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확대와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지역 공공재생에너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가(지방)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이행 점검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함(안 제8조).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발전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그 목표를 공공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확대를 위함으로 규정함(안 제10조).

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행정적·제정적 지원의 체계를 마련

하기 위한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및 예비지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구지정 과정에서 환경 파괴 및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절차를 의무화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자.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공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여 공공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의 지원 및 발전지구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는 등 화석연료 발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개관

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주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전력 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화석연료 발전 종료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전환을 국가적 책무로 명시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총 15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① 공공재생에너지의 법적 정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수립 등, ③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 등, ④ 공공재생에너지 예비·발전지구 및 인프라 구축, ⑤ 재생에너지 부담금, ⑥ 정의로운 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음.

[제정안 구성]

① 공공재생에너지의 법적 정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조~제5조)
- 공공 주체가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 등이 생산하는 에너지를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
- 국가와 지자체에 공공재생에너지 방식으로 발전사업이 수행되도록 할 의무 부여
②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수립 및 목표 설정(제6조, 제7조)
-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 등에 에너지 관련 상위 계획 수립 시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 포함 의무
- 2035년부터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비중을 50% 이상으로 유지 의무
③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제8조~제10조)
- 재생에너지 정책 심의·의결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
- 국가 및 지자체의 자원 조성·투자 노력 의무, 발전산업 구조개편 방안 마련 의무
④ 공공재생에너지 예비·발전지구 및 인프라 구축(제11조, 제12조, 제15조)
- 공공재생에너지 예비·발전지구 지정 근거 신설 및 발전지구 지정시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 국가의 공동접속설비 시설계획 수립 의무화 및 공공기관의 공동접속설비 설치·운영 근거 신설
⑤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 신설(제13조)
-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의 일부(당기순이익의 20% 범위)를 부담금으로 징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세입으로 편입
- 징수된 재원의 40% 이상은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지급
⑥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이행 의무(제14조)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노동자에 대하여 공공재생에너지 사업 주체가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과

[제정안의 조문 구성]

조항	조 제목	비고
제1조	목적	① 총칙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공협력 촉진	
제6조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의 수립	②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수립 등
제7조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의 수립	
제8조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와 운영	③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 등
제9조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등의 자원	
제10조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산업 구조 개편	
제11조	공공재생에너지 예비 및 발전지구의 지정 등	④ 공공재생에너지 예비·발전지구 지정 등
제12조	주민 의견수렴	
제13조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⑤ 재생에너지 부담금
제14조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이행 의무	⑥ 정의로운 전환
제15조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동접속설비 설치 및 운영	④ 공공재생에너지 예비·발전지구 지정 등

2.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및 주요 쟁점 검토

가. 입법 배경 및 입법 필요성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중장기적 목표로 제시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2023년 12월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23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이에 우리 정부는 2025년 2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균형있는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¹⁾ 2038년까지 138,068MW의 발전설비 용량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국제적 캠페인인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²⁾에 444개(2025년 12월 기준)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상황임.

1) 태양광:풍력 설비용량 비교: ('21년 실적) 92:8 → ('36년 전망) 66:34

2)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2014년 CDP(영국 소재 민간단체) 주관으로 시작됨.

[203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단위: MW, 정격용량 기준)

연도	사 업 용										자가 용	합계
	재 생 에 너 지						신 에 너 지			합계		
	태양광	풍 력	수 력	해 양	바이 오	소계	연 료 전 지	IGCC	소계			
2024	28,150 (4,025)	2,293 (55)	1,909 (405)	256 (0)	1,852 (1,083)	34,458 (5,568)	1,148 (840)	346 (346)	1,494 (1,186)	35,952 (6,754)	4,369	40,321
2026	36,090 (5,161)	3,958 (95)	1,909 (405)	256 (0)	1,852 (1,083)	44,064 (6,743)	1,721 (1,260)	346 (346)	2,067 (1,606)	46,131 (8,349)	5,344	51,475
2032	61,739 (8,829)	24,868 (597)	1,909 (405)	256 (0)	1,852 (1,083)	90,623 (10,913)	2,821 (2,065)	346 (346)	3,167 (2,411)	93,790 (13,324)	8,556	102,346
2038	77,203 (11,040)	40,671 (976)	1,909 (405)	256 (0)	1,852 (1,083)	121,890 (13,503)	3,621 (2,650)	346 (346)	3,967 (2,997)	125,857 (16,500)	12,211	138,068

* ()는 실효용량 기준

자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5.2.)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4년 기준 10.69%로, 전년 대비 1.02%p 증가하였고, 68,116G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 중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단위 : GWh, %)

구분		2022		2023			2024		
		발전량	비 중	발전량	비 중	증감률	발전량	비 중	증감률
발전비중*		9.22%		9.67%			10.69%		
신·재생에너지		57,780	100.0	60,400	100.0	4.5	68,116	100.0	12.8
재생E	재 생E	50,406	87.2	53,146	88.0	5.4	58,461	85.8	10.0
	신E	7,374	12.8	7,254	12.0	△1.6	9,655	14.2	33.1
	태 양광	30,726	53.2	33,236	55.0	8.2	37,450	55.0	12.7
	풍 력	3,369	5.8	3,392	5.6	0.7	3,737	5.5	10.2
	수 력	3,545	6.1	3,718	6.2	4.9	4,313	6.3	16.0
	해 양	424	0.7	438	0.7	3.2	418	0.6	△4.4
	바이 오	11,928	20.6	11,918	19.7	△0.1	12,118	17.8	1.7
	폐 기 물	414	0.7	444	0.7	7.2	425	0.6	△4.3
신E	연료전지	5,410	9.4	6,257	10.4	15.7	7,583	11.1	21.1
	IGCC	1,965	3.4	997	1.6	49.3	2,072	3.0	107.9

* 발전 비중 : 국가 총발전량 대비 비중

자료: 2024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한국에너지공단)

그러나 생산된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민간 비중은 80% 이상에 해당하고, 국내 해상풍력 사업을 위한 발전사업허가권 90개 중 44개(약 50%)는 해외 업체가 차지함에 따라, 미래세대의 전기에너지 민영화의 우려가 제기됨.

[공공 및 민간 발전량]

(단위 : GWh)

구분	총발전량	재생E	태양광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력	해양
남동발전	39,664	1,857	122	56	1,643	36	-
중부발전	46,266	678	24	18	613	24	-
서부발전	38,041	157	108	38	-	11	-
남부발전	37,720	961	46	33	877	5	-
동서발전	35,264	310	122	3	185	-	-
한수원	195,155	1,550	103	-	-	1,448	-
지역난방공사	11,347	23	1	-	13	-	-
수자원공사	2,884	2,884	29	5	-	2,530	320
한국전력	327	1	1	-	-	-	-
공공 전체	406,668	8,422	556	152	3,331	4,053	320
	68.3%	16.5%	1.7%	4.5%	32.6%	94.2%	100.0%
공공 외	188,933	42,520	32,168	3,226	6,888	247	-
	31.72%	83.47%	98.30%	95.49%	67.41%	5.75%	-
전체	595,601	50,942	32,725	3,378	10,219	4,300	32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공공재생에너지연대³⁾를 주축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5 공동행동’이 결성되어 입법 운동이 결의되었고, 2025년 7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제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⁴⁾이 제안됨.

3) 기후정의동맹,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발전노조, 진보당, 정의당

4) [2200206]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태성외 50,226인), 청원 원문은 ※참고자료1 참조

청원은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및 고용 불안 해소와 재생에너지 이익의 공공 환수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담고 있고, 해당 청원의 내용이 본 제정안으로 발의됨.

즉, 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시장의 과도한 민영화와 그에 따른 전력산업의 안보적 기능 훼손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공적 투자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확립하여 탄소중립 이행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음.

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성격과 국가 전력망의 안보적 기능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공기관 및 지역 협동조합의 참여를 독려하여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입법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주요 쟁점 검토

본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 제6조는 관련 법에 따른 계획 수립시 2035년부터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50% 이상, 해상풍력발전지구 설비용량의 50% 이상을 공공에너지 설비용량으로 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제정안 제 6조]

제6조(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의 수립) ① 다음 각 호의 계획 수립 주체는 각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총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5. 그 밖에 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담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② 제1항 각 호 계획의 수립 및 달성에 있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공공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35년부터는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개발 현황을 평가하여 민간에 의한 개발이 부진할 경우에는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를 상향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의 해상풍력발전지구에서 시행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의한 설비용량 중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35년부터는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동 조항은 국가가 에너지 전환을 책임지도록 하여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이나, 민간사업자의 시장 참여 기회를 법적으로 제한하여 사업자의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특정 지분을 강제하는 방식은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를 초래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오히려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정 계획상 공공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을 일률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각 계획 수립·운영 과정의 경직성 증가로 이어져, 각 계획 목적 달성에 필요한 공공·민간의 조화로운 역량 발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둘째, 제정안 제13조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당기순이익 20% 이내 범위의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복지 등 지원정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 13조]

제13조(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이용을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 부담금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의 2/1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이 법 제4조와 제5조의 책무, 제6조의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목표 달성에의 기여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세입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한다.

1.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의 지원

2.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3. 에너지 복지 지원

4. 제11조제8항에 따른 발전지구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 중 4/10 이상을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위치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이하 “특별자치시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 등은 이를 제5항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이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이익 공유를 명분으로 당기순이익의 20%를 부과하는 ‘자원 이용 부담금’은 현행 법체계상 「부담금관리 기본법」⁵⁾ 개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신설하기 어려움.

또한 해상풍력의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6)에 따라 자원 점용에 대한 실질적 대가인 ‘점용·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별도의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5) 「부담금 관리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매립목적

5. 에너지시설용지 - 「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추가 신설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 행위에 대해 명목만 달리하여 비용을 중복 부과하는 것으로, 이중 부과 금지 원칙에 배치될 소지가 있으며, 특정 발전원에 대해서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적 요건이 미비한 부담금은 민간사업자에게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지워 민간의 재생에너지 투자·개발을 사실상 무력화 할 우려가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지역 주민 지원 등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⁷⁾에 근거한 주민참여 등으로 실현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셋째, 제정안 제14조는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 재생에너지 발전산업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종전보다 낮은 근로조건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정안 제14조]

제14조(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이행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등 화석연료 발전산업 분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종료(이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를 자신이 수행하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산업에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종전에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으로 인한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 안정, 생계 안정, 전직 및 재취업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실업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각 호의 재원
2.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

⑤ 제1항의 고용, 제3항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 조항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안정을 유지하는 취지가 있으나, 공공기관 등에 대해 특정 대상(화석연료 발전 노동자)의 ‘우선 고용’을 법적 의무로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특히, 우선 고용 조항(안 제14조제1항)은 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종전보다 낮은 대우를 금지하는 규정(안 제14조제2항)은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제약하고 인건비 체계를 경직시켜 조직 내 기존 구성원과의 갈등이나 신규 채

용 여력 감소 등 2차적인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마지막으로, 본 제정안은 공공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늘리고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는 취지가 있으나, 이를 위한 행정적 절차 및 과태료 등 통제 기제가 누락되어 있음.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권 등 지도·감독 권한이나 의무 불이행 시 벌칙·과태료 등 제재 수단이 명시되지 않아 법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또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제12조) 등에는 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안보 및 긴급한 전력 수급 등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외 규정 등 법적 절차 규정이 미비하여 실제 집행 단계에서 행정 혼선 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3. 조문별 검토

가. 목적(안 제1조) 및 정의(안 제2조)

제정안 제1조는 법률의 목적이 “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의 공적 투자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및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정의롭고 균형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있음을 명시하고, 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공공재생에너지”, “주민주도성”, “이익공유” 등의 뜻과 범위를 제시함.

[제정안 제1조, 제2조]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생에너지를 자원으로 하는 발전산업을 공적 투자를 통하여 공적으로 개발, 소유, 운영하여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 및 보전하며, 화석연료 발전산업의 종료 등으로 인한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행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정의롭고 균형있게 개발하여 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발전산업”이란 발전설비를 이용한 전기의 생산, 발전설비의 운영과 정비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공공재생에너지”란 공적 투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설립한 법인이 소유,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 정 안

- 다.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중 공공협력과 주민주도성 및 이익공유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4.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이란 공공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로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로서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란 공공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8.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이란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이용한 전력의 생산과 그 발전시설의 정비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9. “화석연료 발전소”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화석연료 발전산업”이란 화석연료 발전소를 이용한 전력의 생산, 화석연료 발전소의 정비 또는 화석연료 발전 연료의 제조·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1.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란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근무하거나 화석연료 발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화석연료 발전소의 폐쇄로 인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를 말하며,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민간위탁 업체인 경우를 포함한다.
 12. “공동접속설비”란 다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한 전력을 기존 전력계통(「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연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 전기저장장치 및 기타 이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책방향을 말한다.
 14. “공공협력”이란 둘 이상의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호 간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협동조합의 참여 비중 등 공공협력의 촉진과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주민주도성”이란 공공협력의 대상이 되는 협동조합의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16. “이익공유”란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설치·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지역주민 및 해당 기초지자체의 시·군·구민과 공유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 재생에너지법”이라 함)에는 ‘재생에너지⁸⁾’의 정의는 존재하나, 본 제정안과 같이 소유 구조·투자 주체에 따른 ‘공공재생에너지’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나 특정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에너지를 ‘공공재생에너지’로 새롭게 정의하여 민간 재생에너지와 구분하려는 것으로, 공공재생에너지를 별도로 정의하여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음.

다만, 재생에너지 보급을 민간과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공적 투자 영역을 별도로 설정할 경우, 민간 시장에서 투자 유인이 감소하고 이는 국가 전반의 재생에너지 보급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상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국가적 과제⁹⁾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소유 주체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차등적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지원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을 공적 투자를 통하여만 개발·소유·운영하도록 한다면 민간 사업자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제정안 제2조제11호는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를 별도로 정의하여 후술하는 안 제14조(정의로운 전환)의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¹⁰⁾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의 노동자’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의 적용 대상이 더 축소되었음.

따라서 본 제정안에서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만을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타 산업 노동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를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적 주체 중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¹¹⁾상 일반적으로 민간법인에 해당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조직이므로 공적 투자 주체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이에 제2조제14호, 제2조제15호의 “공공협력”, “주민주도성”의 정의 규정에서 협동조합 관련 내용도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및 국가 등의 책무(안 제4조)

제정안 제3조는 제정안에 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재생에너지 개발과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제정안 제3조, 제4조]

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의 수립,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 이용이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재생에너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며, 재생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익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해서 또는 공공협력의 방식으로 공공재생에너지가 개발, 소유, 운영되도록 할 의무를 가지며, 재생에너지 개발과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지, 공유수면, 공공기관의 건물 또는 부지를 활용하는 재생에너지 개발 등은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방식을 우선으로 하도록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공공재생에너지의 발전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과정에서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보장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3조는 본 법안의 핵심 정책인 공공재생에너지 목표 수립과 정의로운 전환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음.

그러나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 적용의 대상 중, ① “공공재
 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의 수립”은 「전기사업법」상 전력수급기본계
 획에, ②“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는 등, 현행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
 고, ③“화석연료산업 종사자의 전환”은 현재 국회에서 「석탄산업전환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특별법 제정을 논의 중임.

[제정안 및 기존 법률 비교]

제정안	기존 법률	비고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 수립	「전기사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각종 법정 계획의 본연의 취지 훼손 우려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급안정, (재생에너지기본계획) 재생에 너지 이용 보급 촉진 (분산에너지기본계획) 분산에너지 활성화기반조성 등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별 법령상 지정요건 및 기준에 따라 지구내 사업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각 특별법의 입법 목적 상실 우려 및 법적 분쟁 야기 가능성 * (해풍법 발전지구) 정부 주도 계획입지의 인허가 의제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 등 지원 * (분산법 분산특구) 분산형 전력망 및 지역내 e생산·소비 확대를 위해 규제 특례 등 적용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국회에서 논의 중

이미 규정된 내용에 앞서 본 제정안을 우선 적용하도록 할 경우 개
 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기존 법에 따라 사
 업을 준비·추진 중인 민간사업자의 지원 내용과 충돌되거나 법적 분쟁
 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제정안 제4조는 재생에너지를 공공 자원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강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개발의 공적 책무를 명문화하는 의의가 있음.

다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책 마련 및 재원 조성 규정(제4항)은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법령과의 중복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제정안 및 기존 법률 비교]

제정안	기존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공공재생에너지의 발전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9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을 통하여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확보 시책, 재원 조성을 구체화하는 것이 법체계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다.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공협력 의무(안 제5조)

제정안 제5조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동조합이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제정안 제5조]

제정안
제5조(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공협력 촉진) ①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조제3호마목의 협동조합이 필요한 요건을 갖추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공협력을 통한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방식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협력의 요건과 방안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5조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공협력’ 촉진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확대하려는 취지임.

‘공공협력’은 제정안 제2조 제1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호 간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공공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발전 수익의 주민 배당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만

“우선 검토”와 “성실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간 협력시 형평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라.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 공공재생에너지 목표 비율 포함 의무 (안 제6조, 제7조)

제정안 제6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주요 법정 계획 수립시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공공주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2035년부터는 그 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함.

또한 제정안 제7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5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2년 단위의 국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5년 단위의 지역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제정안 제6조, 제7조]

제정안
제6조(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의 수립) ① 다음 각 호의 계획 수립 주체는 각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총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5. 그 밖에 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담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② 제1항 각 호 계획의 수립 및 달성에 있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35년부터는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개발 현황을 평가하여 민간에

제 정 안

의한 개발이 부진할 경우에는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를 상향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의 해상풍력발전지구에서 시행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의한 설비용량 중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35년부터는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의 책무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고 제6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목표
2.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의 이행을 위한 투자 계획
3. 제2조제3호나목의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업 계획
4. 공공협력 계획
5. 제11조의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 육성, 해제에 관한 계획
6. 제14조의 정의로운 전환 의무 이행 계획
7. 그 밖에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역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공 비중’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정책적 근거임.

특히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들에 공공 재생에너지 목표를 반영하게 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에너지 생산을 명시하고 2035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공공 비중 50%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려는 데 그 입법적 의의가 있음.

다만, 동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법률에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비중을 ‘50% 이상’으로 정할 경우, 글로벌 에너지 기술 트렌드나 전력 시장의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재량권이 제약될 우려가 있음.

참고로, 에너지 생산량과 관련된 법인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또한 구체적인 수치를 법률이 아닌 고시 또는 하위 계획에서 정하여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목표 수립 대상 및 수치 규정 여부 입법례]

	제정안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대상	·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비중	· 에너지 수급 등	· 설비용량 등	·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목표 수치	· 법률에 규정 (50% 이상)	· 법률에 미규정 · 에너지기본계획 (제7조12)	· 법률에 미규정 · 전력수급기본계획 (제25조13)	· 법률에 규정(제12조514)) - 다만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상한선 설정

12) 「에너지법」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정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④ (생략)

13) 「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공공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50% 이상으로 강제할 경우, 민간 자본의 유입이 감소하여 국가 전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저하되고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재생에너지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현 국정과 제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음.

마지막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정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 ⑤ (생략)

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 5의2.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 ⑨ (생략)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에 따른 15년 단위의 ‘국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 수립될 경우 기존 계획들과의 우선순위 설정 및 내용 중복에 따른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본 제정안과 유사한 「신재생에너지법」 제5조는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하는데, 제정안은 15년 단위의 계획을 2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기 불일치 문제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음.

[목표 수립 대상 및 수치 규정 여부 입법례]

	제정안	「신재생에너지법」
단위	15년	10년 이상
주기	2년	5년
내용	1.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목표 2.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의 이행을 위한 투자 계획 3. 제2조제3호나목의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업 계획 4. 공공협력 계획 5. 제11조의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 육성, 해제에 관한 계획 6. 제14조의 정의로운 전환 의무 이행 계획 7. 그 밖에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0.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정 계획상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을 일률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각 계획 수립·운영 과정에 경직성을 증가시켜 공공·민간의 조화로운 역량 발휘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민간 사업자의 시장 참여 기회를 법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민간 사업자의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임.

마.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안 제8조)

제정안 제8조는 제정안에 따른 계획 수립·시행이나 공공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재생에너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8조]

제정안
제8조(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와 운영) ① 공공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중장기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목표의 설정 2. 국가계획 수립과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이행 점검 3. 제11조에 따른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 및 해제 4. 제14조의 정의로운 전환 의무 이행 계획 5. 그 밖에 공공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국무총리 2.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 각 호별 동수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소유, 운영하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주체를 대표하는 사람 3. 기후환경단체,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체인 노동단체,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6조상의 각 비율이 모두 달성될 때까지 매년 이행 평가를 하여 그 결과 보고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별도의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과 이행 점검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공공재생에너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공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와 관련한 의사 결정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관계부처와 전문가 및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¹⁵⁾가 에너지 전환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최상위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¹⁶⁾ 등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⑨ (생략)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 7. (생략)
8.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9.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
1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 14. (생략)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8조(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개요]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 (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근거	제정안 제8조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	「신재생에너지법」 제8조
목적	공공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확대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소속	국무총리	대통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위원장	2인 · 국무총리 ·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 하는 사람	2인 · 국무총리 ·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 하는 사람	1인 · 기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위원	20인 · 기후부 등 공무원 ·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소유·운영자 · 기후환경단체, 노동단체, 주민단체 등	50명 이상 100명 이내 · 재경부 등 공무원 ·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인 · 재경부 등 공무원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자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심의사항	· 중장기 공공재생에너지 설 비용량 확대 목표의 설정 · 국가계획 수립과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이행 점검 ·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자구의 지정 및 해제 · 정의로운 전환의무 이행 계획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 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국가발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감축목표 이행현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 국가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점검 결과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 국가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 립·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법·제도, 자원 배분 방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 육성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 국 제협력에 관한 사항	·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 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 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 항 ·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따라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행정 조직의 비대화 및 부처 간 업무 중복에 따른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기능을 통합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은 현행 에너지 관련 타법상 심의회와 심의 사항이 중복되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증대될 우려가 있고, 기존 법령상 근거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개별 심의회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공공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자원(안 제9조), 발전산업 구조 개편
(안 제10조)

제정안 제9조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투자할 의무를 부여하고, 제정안 제10조는 공공재생에너지의 효과적 확대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전산업의 구조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함.

[제정안 제9조, 제10조]

제 정 안
제9조(공공재생에너지 발전 등의 자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 및 투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성 및 투자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산업 구조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확대를 위하여 발전산업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정안 제9조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자원 마련 의무를 규정하여 국가 차원의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명문화하려는 의의가 있음.

그러나 ‘기후정의’ 용어의 정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정안에 규정된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모호하고, 구체적인 자원 조달 계획 없이 재원을 조성 및 투자하도록 선언적 의무만을

부여하여 제정안 제4조제4항17)에서 부여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성 의무와 중복되는 점이 있음.

한편 제정안 제10조의 전력산업 개편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제정안 제10조는 구조 개편 방안을 시행하되,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력 분야 공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후 별도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과거 2000년 제정되었던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2009년 폐지)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분할’ 등 개편 방안이 마련되어 입법된 바 있음.

둘째, 현행 「전기사업법」 제56조제1항제13호18)는 이미 전기위원회에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별도 내용의 조정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조 개편 의무를 부여하는 본 제정안 조항은 현행 전기위원회의

17)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공공재생에너지의 발전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

18) 「전기사업법」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전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한다.

13.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심의 권한과 중복되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조 개편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존 법령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 제정안 규정에 대하여 발전산업의 구조 개편은 전력산업 전반과 함께 지역 경제,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제출함.

사.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안 제11조, 제15조), 주민 의견수렴(안 제12조)

제정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는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1조, 제12조]

제 정 안
제11조(공공재생에너지 예비 및 발전지구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재생에너지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 환경훼손·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이하 “발전지구”라 한다)를 지정·육성 및 해제(이하 “지정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전지구 지정 등을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시·도지사가 발전지구 지정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시·도회의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발전지구 지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항과 제3항의 지정권자에게 예비·발전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비·발전지구 지정의 신청, 요건,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비·발전지구에서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우선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의 종류, 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발전지구 지정 등에 있어 환경 파괴 및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예비지구의 지정 등의 단계부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

제 정 안

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발전지구에서의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제2조 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발전사업자가 공공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우선권 부여의 내용,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발전지구 주변 지역주민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발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⑩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이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지구 또는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발전지구로 본다.

1.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발전지구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12조(주민 의견수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등에 있어 그 계획안을 지구 지정 등 예정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열람 장소를 지정하여 공고하고, 해당 시·도의 시·도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함에 있어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각 의견의 특성에 따라 현장 실사에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환경, 보건, 경관, 문화재 등 관계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고, 주민대표의 참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지구 지정 등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3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의견인 경우에는, 제1항의 의견수렴 종료일로부터 60일 내에 민원해소대책을 포함한 답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발전지구 지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고, 의견수렴, 현장 실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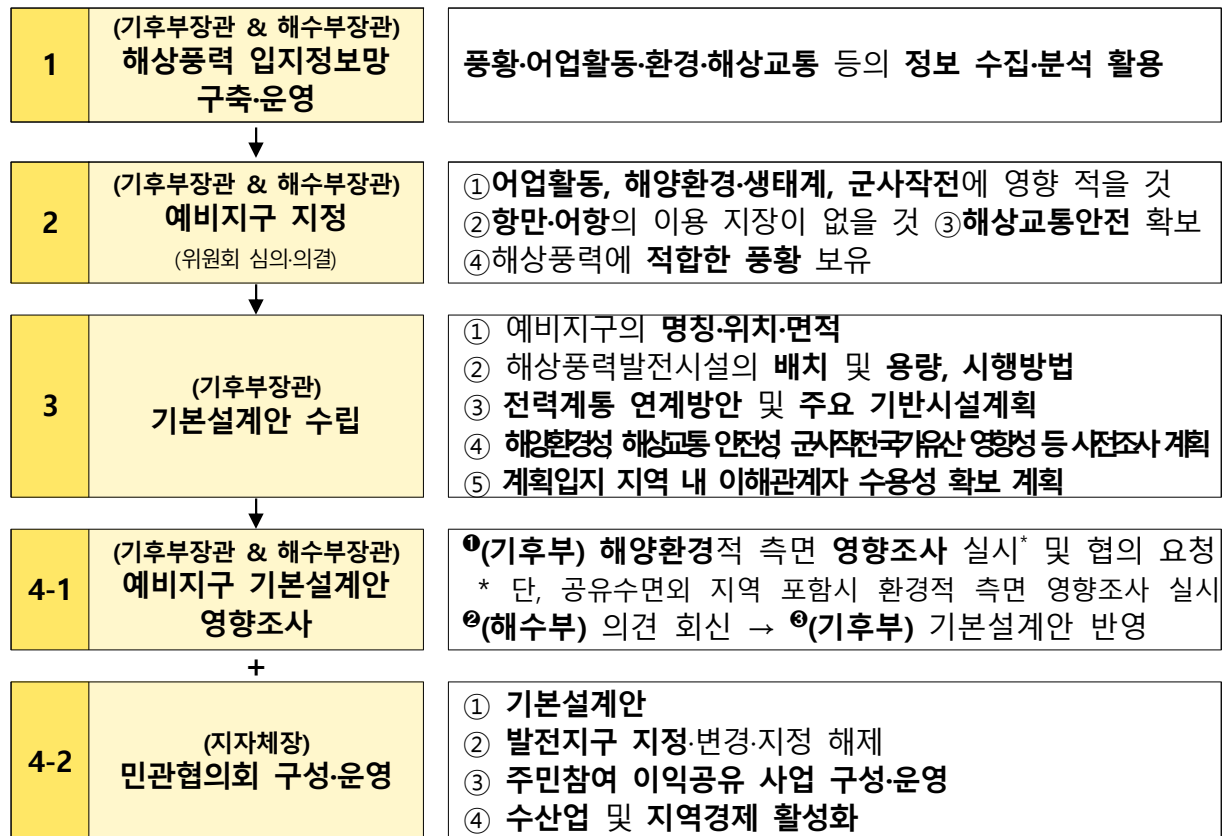
제15조(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동접속설비 설치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확대 및 보급을 위하여 발전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동접속설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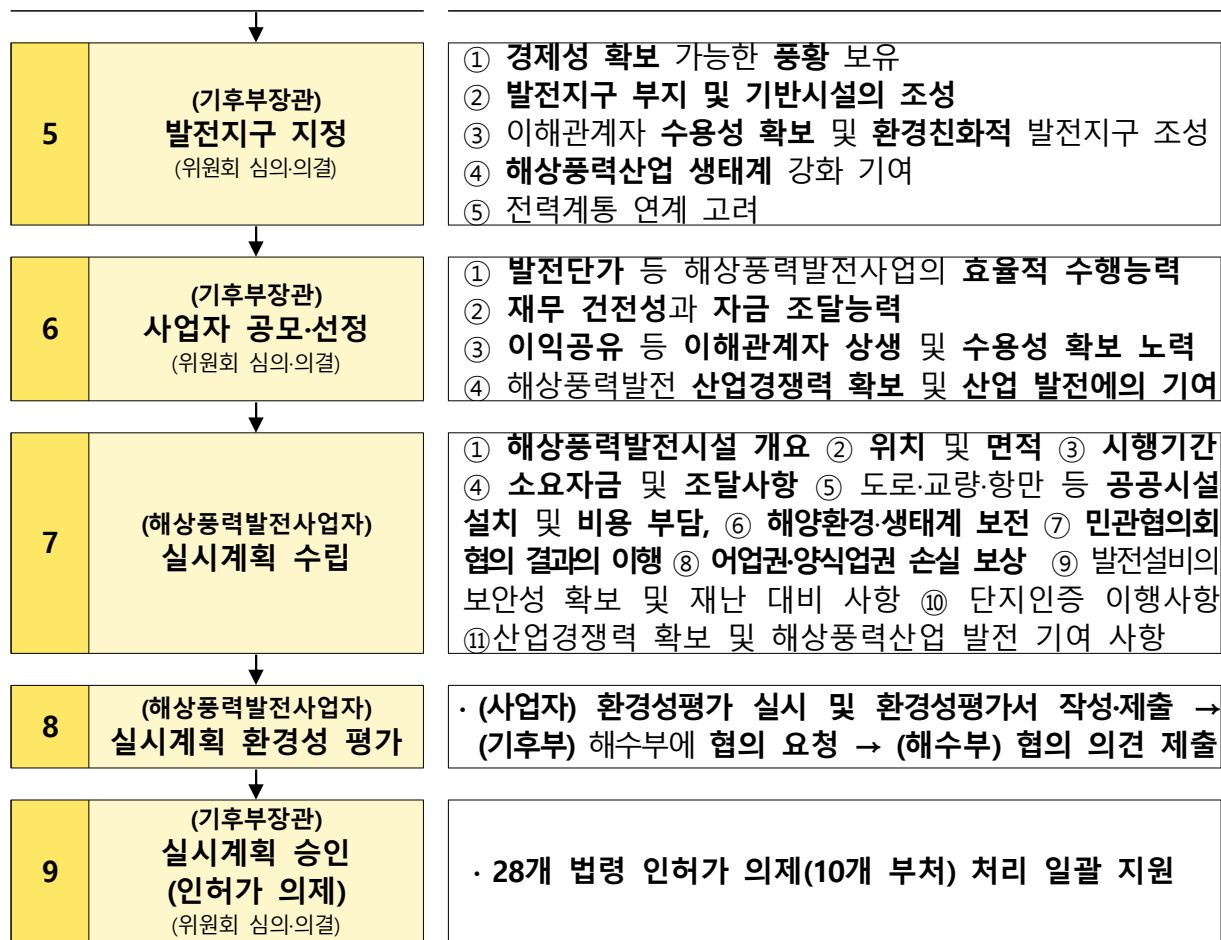
② 제1항의 발전지구 공동접속설비의 설치 및 운영은 제2조제3호나목의 공공기관이 할 수 있다.

제정안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할 경우, 계획적인 입지 도입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제정안과 규정 체계가 유사한 입법례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이라고 함)에서는 발전지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제12조), 예비지구의 지정 등(제14조), 예비지구의 지정해제(제15조), 기본설계의 수립·확정 등(제16조), 민간협의회 구성·운영(제17조), 발전지구의 지정(제19조), 발전지구 전력계통의 연계(제20조), 발전지구의 지정해제(제21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해상풍력법」 상 해상풍력발전 절차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러나 제정안은 발전지구 및 예비지구 지정의 근거만을 제시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앞서 유사 입법례인 「해상풍력법」과 비교할 때 절차적 구체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절차의 구체성 미비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 논란이나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사전 입지조사, 민관 협의체 운영 등 사업의 전 주기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에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제정안 제11조제10항은 「해상풍력법」 및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지구를 본 법의 발전지구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행정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각 법률이 제정된 목적이 ‘해상풍력 육성’,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상이함에 따라 발전지구 지정 목적 간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신재생에너지법¹⁹⁾」과 「해상풍력법²⁰⁾」, 「분산에너지법²¹⁾」 등에서 이미 유사한 목적의 집적화단지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20)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발전지구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17조에 따라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풍향을 보유할 것
2. 발전지구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3.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발전지구 조성이 가능할 것
4.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전력계통 연계를 고려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 ⑦ (생략)

2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한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및 특화구역 지정 근거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 중복이 발생하여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특히 공공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우선 수행권을 부여할 경우, 기존 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역차별을 초래하여 심각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별도의 지구 신설보다는 기존 법령 체계 내에서 정책적 우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마지막으로 제정안 제15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지구 내 공동접속설비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가 직접 전력망을 설치하여 필수 사회기반시설로서 전력망을 배치하려는 취지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공서비스 인프라 설치 및 운영에서 접속선로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정부가 아닌 송전사업자를 건설 주체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타 발전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에너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으므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과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아.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안 제13조)

제정안 제13조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당기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세입으로 하며, 징수한 부담금 등의 40% 이상을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13조]

제정안
제13조(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이용을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 부담금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의 2/1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이 법 제4조와 제5조의 책무, 제6조의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목표 달성에의 기여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세입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한다. 1.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의 지원 2.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3. 에너지 복지 지원 4. 제11조제8항에 따른 발전지구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 정 안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 중 4/10 이상을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위치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이하 “특별자치시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 등은 이를 제5항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⑧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이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 조항은 햇빛, 바람 등 공공 자산인 자연 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발전 수익의 일부를 ‘자원 이용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여 공공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화석연료 발전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복지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발전 이익의 사회적 환류를 실현하려는 의의가 있음.

다만,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²²⁾에 따라 별도 부담금 설치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므로 동 법률의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또한 안 제13조제2항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

22) 「부담금 관리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 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준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기획예산처는 ① 부과요건의 구체적 기준 및 근거가 확보되지 아니한 점, ② 부담금 부과로 인한 공공요금의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 ③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만 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동 조항에 대한 삭제 의견을 제출하였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담금 부과 대상과 사용 대상의 관련성이 부족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법적 요건이 미비한 부담금은 민간사업자에게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지워 민간의 재생에너지 투자·개발을 사실상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자.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안 제14조)

제정안 제14조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등 화석연료 발전산업 분야 사업의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노동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산업에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14조]

제정안
제14조(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이행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등 화석연료 발전산업 분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종료(이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를 자신이 수행하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산업에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종전에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으로 인한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 안정, 생계 안정, 전직 및 재취업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실업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각 호의 재원 2.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 ⑤ 제1항의 고용, 제3항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의미함(「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제13호).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마련(제47조),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제48조), 사업전환 지원(제49조), 협동조합 활성화(제52조),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립(제53조) 등 지원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본 제정안은 이와 같은 ‘간접 지원’이 아닌, 노동자들의 ‘우선 고용’을 의무화하는 ‘직접 지원’ 형식을 규정하여, 노동권 강화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러나 화석연료 발전사업 종사 노동자에 대한 우선 고용 조항(제1항)은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근로조건 유지 조항(제2항)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제약하여 재무 건전성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석연료 발전사업 종사 노동자에 대하여는 본 조항을 통한 지원보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 추진²³⁾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안」²⁴⁾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지원 목

23) 2025.6.2. 태안화력 사망사고를 계기로 기후부-양대노총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2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

적에 보다 부합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고용노동부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한 재원 중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중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직무 연관성, 재정부담 및 근로조건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특정 계층·특정 출신에 대한 특별채용은 타 계층에 대한 채용기회 박탈 등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46

환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등

※ 참고자료 1 :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등록일자	2025. 6. 23.		
동의기간	2025. 6. 27. ~ 2025. 7. 25.	국민동의 수	50,000
청원자	성명	이태성	
제목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청원원문			
[청원의 취지] 이 청원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모두의 전환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올해 12월부터 석탄발전소 폐쇄가 시작되지만, 여기서 일하는 1만 5천명여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 다. 누군가의 삶이 희생되는 방식으로서는 안전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정부도 이미 석탄을 멈추고 재생에너지로 가야한다는 걸 알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탈석탄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석탄발전은 멈추더라도 그 자리에 남은 지역과 사람들의 삶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이 법이 있으면, 폐쇄되는 석탄발전소의 노동자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 함께 만드는 재생에너지전환이라면, 태안, 하동, 삼천포, 보령, 당진, 영흥과 같은 석탄발전이 있던 지역이 이제는 기후위기를 막는 전환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이 안전한 삶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은 대기업과 해외자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라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의 90% 이상이 민간이며, 60%는 해외 자본입니다. 바람과 햇빛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민간이 재생에너지 개발을 독점하면 필요 이상으로 전기요금은 오르고, 지역사회는 소외되고, 전환의 이익은 소수가 독점하게 됩니다. 이 법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 시민과 함께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만들어가자는 제안입니다. 2030년까지 전체 재생에너지 중 절반 이상을 공공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이 법의 목표입니다.

이 법으로 우리는 재생에너지로의 빠르고 안전한 전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느리고, 방향도 틀렸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10%도 안 됩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소수의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전환의 속도도, 안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더 공정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입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성공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고, 전기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이태성입니다. 저는 충남 태안에서 나고 자랐고, 스물 여섯에 태안 석탄화력 발전소에 입사해 25년간 일하며 두 딸을 키우고, 어머니를 모시며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발전소의 굴뚝은 제 삶의 절반이었고, 생계였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

간, 나와 동료들이 일해오던 일터는 ‘기후악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석탄 발전소를 없애야 한다고 외쳤고, 우리 노동자들은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발전소는 우리에게 단순히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거기엔 일하며 삶으로 투영된 가치, 땀과 눈물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봄과 가을, 가뭄과 폭우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40도가 넘는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는 노동자들, 기후재난으로 삶을 잃는 못 생명들.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단순히 발전소를 지키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 이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동료들은 말합니다. 석탄발전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됩니다.

2025년 12월, 제가 일한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전국 40기의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습니다. 그 안에는 8,41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일자리를 지킬 실질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게다가 폐쇄를 이유로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김충현님의 사망사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 전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발전소 노동자, 지역주민, 기후활동가, 연구자,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전환의 희생자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질문합니다. 왜 이 전환은 늘 누군가의 해고와 고통 위에 서야 합니까? 왜 바람과 햇빛처럼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할

에너지가 누군가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까? 기후위기의 책임은 함께 나눠야 하면서, 그 위험은 왜 가장 약한 이들에게 집중됩니까?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이 외면된 석탄화력발전소 현장에서 고립과 배제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몸으로 확인해왔습니다. 지금의 재생에너지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이 아니라 민간 중심의 수익 구조 속에서 추진되면서 공유되어야 할 자원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그 과정에서 지역과 시민은 점점 더 배제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에 맞서 빠르게 전환해야 할 이 시점에도, 전환의 방향은 기업의 수익성 계산에 따라 결정되고, 위기 대응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의 힘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도, 에너지 전환도, 일자리의 문제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환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위험을 나누며, 함께 안전해질 수 있는 방식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공공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공적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전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기 위해 이 법을 제안합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전환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함께 청원해주세요.

※ 참고자료 2 : 제정안 비용추계서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재정수반조문별 추계여부 현황]

재정수반요인	추계여부	비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의 수립(안 제7조)	○	· 유사사례 참조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안 제8조)		
공공재생에너지 예비 및 발전지구의 지정 등(안 제11조)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재생에너지 자원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안 제13조)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이행의무(안 제14조)		

II. 비용추계 결과(일부추계)

□ 추가재정소요 : 향후 5년간 총 20억 5,500만원, 연평균 4억 1,100만원

-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3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의 수립(안 제7조)	1,800	—	100	—	100	2,000	400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안 제8조)	11	11	11	11	11	55	11
합 계	1,811	11	111	11	111	2,055	411